

평화재단 제16차 전문가 포럼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2007 11 21^(木) 14:00-17:00^{pm}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

 The Peace
Foundation
평화재단

프로그램

평화재단 제16차 전문가포럼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 14:00 개 회
사 회 |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14:05 인 사 말 법 률 (평화재단 이사장)
- 14:15 발 표 “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14:45 증 언 신동혁 (14호관리소 완전통제구역출신 북한이탈주민)
- 15:00 지정토론 김병로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대교수)
김동균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16:00 종합토론
- 17:00 폐 회

목차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4 • 인사/말
법 료 | 평화재단 이사장

5 • 발/표/문/
김수암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35 • 질/의/&/메/모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이행과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입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남북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인권문제는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그 간극을 좁혀나가기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인권비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도 이제는 반복적 입장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남북화해를 앞세워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해왔던 것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북한인권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등 관련 주체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분석을 기초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화재단은 위와 같은 취지 속에서 북한인권문제 중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관리소(일명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북한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북한인권 개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북한 구금시설 내에서 수감원을 대상으로 일상적구조적으로 행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사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이미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나아가 남북화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인 북한인권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07. 11.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문

김수암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 I. 들어가는 말
- II. 북한 국내법과 구금시설
- III. 구금시설 현황 및 실태
- IV. 구금시설의 인권실태
- V. 개선방안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김수암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I. 들어가는 말

북한체제의 폐쇄적 속성으로 인해 북한인권 전체적인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인권 실상이 극히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보듯이 북한 내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유엔, 개별국가, NGO 등 각 행위주체별로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그런데 앞으로 북한인권 개선운동은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상황이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데이비드 호크의 『감춰진 수용소』,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고문 공화국, 북한』 등에서 보듯이 점차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전문보고서들이 발간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에서 보듯이 북한의 인권상황 중 구금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 현상으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되어 왔다.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 경비원,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이 탈출하여 증언함으로써 참혹한 실상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시설에서 고문, 기아와 질병 등으로 인해 수감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구금시설의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우선 형법, 형사소송법 등 북한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과 구금시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법규를 토대로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금시설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이러한 구금시설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하는 인식의 측면과 구체적 인권 유린 실태를 정리하고자 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북한법과 관련한 대응,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접근 및 대응방안, 국제사회 및 기구를 통한 접근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북한 국내법과 구금시설

북한에서 인신을 구속하는 구금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국내법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인신의 구속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이고 이외에 검찰감시법, 판결관정집행법 등에서도 인신 구속과 관련한 조항들을 발견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북한은 1990년대 형사법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왔는데, 2004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부 비판을 수용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2005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소폭 개정하였다.

가. 유기·무기노동교화형과 교화소

2004년 개정된 북한 형법에는 기본형벌과 부가형벌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형벌에는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이 있고, 부가형벌에는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이 있다(제28조). 이와 같이 형법상 인신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형벌로는 유기·무기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이 있다. 1999

년 형법에서는 노동단교화형은 유기와 무기 구별 없이 6개월부터 15년까지로 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유기노동교화형과 무기노동교화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유기노동교화형의 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수감하여 노동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형 집행기간에는 국민의 기본권리가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2004년 형법 제30조). 그런데 2005년 개정 시 기본권의 ‘일부’가 정지된다고 수정하고 있다.

나. 노동단련형과 ‘일정한 장소’

다음으로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형벌로 노동단련형이 신설되었다. 형법에 규정된 총 245개의 범죄 조항 중 노동단련형이 규정된 조항은 총 165개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39개 범죄조항은 전적으로 노동단련형만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단련형의 경우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동교화형과는 달리 노동단련형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된다. 그리고 노동단련형의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인데,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1일은 노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놓고 있다(제31조). 이러한 규정에서 보듯이 노동교화형 1일이 노동단련형 2일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 국내법규에 규정된 구금시설은 유기·무기노동교화형을 집행하는 ‘교화소’와 노동단련형을 집행하는 ‘일정한 장소’를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단련형을 집행하는 ‘일정한 장소’는 어떠한 구금시설을 지칭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형법 이외의 법률을 통하여 노동단련이라는 처벌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찰감시법에는 검사는 범위반 행위를 바로 잡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노동단련 또는 구금처벌을 할 경우”(제40조 3항)를 들고 있다. 이 규정에서 보듯이 검사는 법 위반자에 대해 ‘노동단련’의 처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판결판정집행법에도 노동단련과 무보수 노동에 대한 규정이 있다. 먼저, 재판소가 집행을 중지 또는 정지하는 판정을 하는 사유의 하나로 “노동교화형, 노동단련, 무보수 노동의 처벌을

받은자가 중병에 걸려있거나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일 경우”(판결판정 집행법 제18조 3항)을 들고 있다. 또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기각하는 사유의 하나로 “로동고화형, 로동단련, 무보수 로동의 처벌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제22조 1항)를 들고 있다. 그리고 노동단련, 무보수 노동을 적용하는 판정의 집행은 해당 권한이 있는 기관에 판정서등본, 확정통지서를 보내도록 규정(제43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이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노동단련형이 새로운 형벌로 신설되기 이전 검찰감시법, 판결판정집행법에 ‘노동단련’과 ‘무보수 노동’이라는 2가지 처벌 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노동단련과 달리 노동단련형은 형법 상으로 명시적으로 형벌로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상으로 수사·예심·기소·재판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라는 구금시설과 더불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가 준수되는 지 지속적으로 자료를 추적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2004년 형법 개정 이전에 후술하듯이 인민보안성이 관할하는 노동단련대가 운영되고 있었다. 새터민들은 노동단련대에서의 노동단련을 통한 처벌은 인민보안기관에서 결정하고 관할한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송환된 탈북자들의 처벌에서도 송환 즉시 보위부에서 정치적 성격의 범죄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받은 이후 단순한 월경이라고 판정될 경우 인민보안기관으로 이관하고 인민보안기관에서 노동단련대에 수감시키는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단련대에서는 공민권이 유지된다고 한다. 노동단련대의 경우 1개월에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감되어 노동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증언이다. 그런데 노동단련형의 경우 6개월에서 2년까지로 기간이 훨씬 길다.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단련대가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단련형을 집행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새로운 구금시설을 건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로서 어떠한 구금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구금시설에 보내지는 범죄

범죄유형	교 화 소		일정한 장소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14개 범죄)	국가전복음모죄 등 5가지	국가전복음모죄 등 14가지	-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16개 범죄)	-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등 15가지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등 10가지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죄(104개 범죄)	국가재산 착취죄, 국가재산 강도죄 등 6가지	국가재산 훔친 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 83가지	국가재산 훔친 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 76가지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26개 범죄)	역사유물 밀수 밀매죄, 마약밀수 밀매죄 등 3가지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등 25가지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등 16가지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39개 범죄)	-	집단적 소요죄, 직무집행방해죄 등 30가지	직무집행방해죄, 허위날조, 유포죄 등 29가지
사회주의공동생활 질서를침해한 범죄(20개 범죄)	-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 15가지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 18가지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26개 범죄)	고의적중살인죄, 유괴죄 등 3가지	고의적중살인죄 등 25가지	정당방위초과중상해죄 등 13가지

*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54.

다. 일반범죄와 정치범죄 구분에 따른 관할과 구금

북한의 구금시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북한 형법상 범죄의 구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후술하는 관리소는 정치범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형법에는 일반범죄와 정치적 성격의 범죄를 구분하고 수사와 예심의 관할권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구금시설은 정치적 범죄와 정치적 성격을 지니지 않은 일반범죄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치적 범죄로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는 형법 제59조부터 제72조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반국가범죄: 국가전복음모죄(제59조), 테러죄(제60조), 반국가선전, 선동죄(제61조), 조국반역죄(제62조), 간첩죄(제63조), 파괴암해죄(제64조),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 사촉죄(제65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제66조)

- 반민족범죄: 민족반역죄(제67조),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제68조), 조선민족적대죄(제69조)

-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제70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죄(제71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제72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와 예심은 안전보위기관, 일반범죄사건의 수사와 예심은 인민보안기관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제122조, 제124조). 그리고 14개 조항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형벌은 노동단련형이 없고 유기·무기·노동교화형과 사형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형벌 규정에 따라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도 국가안전보위부의 수사와 예심을 거쳐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일반범죄와 달리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의 1심 재판은 인민재판소가 관할하지 못하고 도(직할시) 재판소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형을 언도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교화형을 언도받을 경우 교화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후술하듯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는 보위부가 수사하고 예심을 담당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교화소에 수감되지 않고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성격의 범죄의 경우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거치고 있는 지 여부와 재판을 거친다면 어디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자료를 추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표> 범죄별 관할기관

구분	사건 종류	관할
수사(수사원)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안전보위기관
	일반범죄사건	인민보안기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사건	검찰기관
예심(예심원)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안전보위기관
	일반범죄사건	인민보안기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사건	검찰기관

<표> 재판소의 관할대상

구분	관할 대상
인민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 사건
도(직할시)재판소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로동교화형으로 기소된 일반범죄 사건의1심 재판 도(직할시)내 인민재판소 판결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의 제2심 재판 필요시 도(직할시)내 인민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의 직접 재판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의 제2심 재판 필요시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의 직접 재판

라. 구속처분과 구류장

수사와 예심과정에서 구속처분에 따른 인신 구속과 구금시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8년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헌법에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9조). 그리고 2004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람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제177조)고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법일꾼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252조)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상으로 예심 과정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인민보안기관과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구류장’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조항과 구속처분 사유를 밝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절차 이외에는 체포, 구속할 수 없는데(2004년 형사소송법에서 신설), 예심원은 체포영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 체포영장 발급의 방법을 통한 검사의 승인을 받아 구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구류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구속기간을 살펴보면 첫째,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다. 둘째, 재판소에서 돌려보낸 유기·무기 노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0일,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87조). 셋째, 예심과정에서 구속을 연장하는 문제이다. 예심을 2개월 내에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시(구역)·군 예심원과 도(직할시) 예심원은 도(직할시) 검찰소장, 중앙예심원은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를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늘이려 할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늘일 수 있다. 노동단

런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으로서 10일 이내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8조)

그리고 북한은 그동안 구금과 관련하여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북한은 “체포, 구속처분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곧 알려주며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알려준다(형사소송법 제183조)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특히 이러한 조항이 정치범의 실종과 관련해 그 가족에 대한 통지에도 적용될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마. 구금 관련 기타 규정

북한에는 사회안전단속법이 제정되어 있고 사회안전단속법에 의하면 사회안전원(현 인민보안원)은 억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법 위반 행위가 엄중하거나 범위반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법 위반자를 한 장소에서 한번에 여러명 단속하였을 경우 억류할 수 있다(제33조). 법 위반자의 억류기간은 3일이며, 필요한 경우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제34조).

다음으로 구속처분에 대한 예외규정, 형벌집행의 정지조항을 두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인신구속에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임신한 피심자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80조)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431조에서 ‘형벌집행의 정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의 병이 나을 때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집행 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판결판정집행법에서도 “노동교화형, 노동단련, 무보수 노동의 처벌을 받은 자가 중병에 걸려있거나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월까지의 여성일 경우” 집행을 중지 또는 정지하는 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1항).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실제로 구류장과 교화소에 임신한 여성이 수감되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해나갈 필요가 있다.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형기 계산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이 준수되고 있는 지도 조사해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형법에는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유기노동교화형 기간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조).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는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의 형벌집행기간의 계산은 판결을 집행하는 날부터 한다. 피소자가 이미 구류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계산한다(제425조)고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노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한다(형법 제31조)고 되어 있다.

끝으로 정규재판조직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주민을 처벌하는 또 다른 유사사법 제도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동지심판회를 들 수 있다. 북한법을 상으로 이들 조직이 유사사법법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검찰감시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검찰감시법 제40조에 검사가 범위반 행위를 바로잡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노동단련 또는 구금처벌을 하려할 경우”를 들고 있다.

Ⅲ. 구금시설 현황 및 실태

가.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에서는 일반범죄와 정치범죄를 구분하여 관할기관을 배정하고 정치범에 대해서는 도(직할시) 재판소가 1심 재판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유기·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화소에 수감되어 수감생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들은 형법에 규정된 교화소라는 교정 시설이 아닌 집단 수용소에 수용되어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정치범수용소로 알려진 ‘관리소’이다. 북한이 정치사상범을 수용하기 위해 많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거나 수용소경비원으로 생활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에 의해 세상에 알

러지게 되었다.

관리소는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혁명화 구역과 완전통제구역(특별독재대상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완전통제구역은 종신수용소로서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 수용자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처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결국은 수용소 내에서 죽게 된다. 따라서 완전통제구역의 수용자들에게는 사상교육을 시키지 않고 채광 및 영농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지식만을 교육시킨다. 혁명화구역은 ‘가족구역’과 ‘독신자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수감되는 정치사상범은 일정기간(1년 내지 10년) 경과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출소 시에는 수용소 내의 생활상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오는 데 이를 위반하면 재수감 된다.

현재 존속하고 있는 국가보위부에서 관리하는 관리소(정치범수용소)는 14호 관리소(평남 개천), 15호 관리소(함남 요덕), 16호 관리소(함북 화성), 22호 관리소(함북 회령), 25호 관리소(함북 청진) 등 5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약15만~20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몇 개 운영되고 있고, 몇 명이 수감되어 있는가는 좀 더 정교한 추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함경북도 경성군 창평리 제21호 정치범수용소, 함경남도 덕성군 리망지리 제23호 정치범수용소, 함경남도 정평군 제00호 정치범수용소, 평안남도 북창군 석산리 제17호 정치범수용소, 자강도 희천시 제00호 정치범수용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는 증언이 이루어진 바 있다.¹⁾ 최근의 탈북자들 증언 따르면 함경남도 대흥 관리소와 검덕 관리소가 운영되어 진다는 증언도 있다.²⁾

다음으로 정치범수용소 내에 구류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구류장은 수용소 규정 위반자(절도, 연애 등), 지시 불복종자, 사회 소식에 관심을 갖는 자, 감독이나 보위원의 눈 밖에 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용소의 감옥이다. 정치범이 구류장에 수감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머리를 삭발하게 하고 무차별적인 구타로 초죽음 상태로 만든다. 또한 수감자들은 새벽 5시에 기상한 후 밤 12시 취침 전까지 식사 시간과 대소변 시간을 제외하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한다. 완전통제구역의 구류

1) 대한변호사협회, 『2006 북한인권백서』 (서울: 라인피아, 2006), p. 237.

2) 오경섭, “북한 구금시설 현황,” 평화재단 주최 북한인권전문가 모임, 2007.8.2.

장 수감자들은 죄질에 따라 비밀처형 대상, 대건설 대상, 출소대상으로 분류된다. 구류장은 정치범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공포시설이다. 구류장은 모든 정치범수용소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15호 정치범수용소의 구류장은 철창으로 된 좁은 감방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22호 정치범수용소는 50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완전 밀폐식의 구류장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³⁾

나. 교화소

북한형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유기·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받은 재소자는 ‘교화소’에 수감된다. ‘교화’라는 말은 범죄를 범한 자들을 육체노동과 사상투쟁·사상교양을 거쳐 참된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교화소에 수감된 죄인들을 ‘교화인’으로 교화소에서 생활을 ‘교화살이’ 교화인이 형벌로서 행하는 노동을 ‘교화노동’ 등으로 부르고 있다. 즉, 교화소란 ‘노동을 통한 재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범수용소와 달리 인민보안기관에서 관리하는 정치범교화소가 존재하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25호 관리소(함북 청진)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가 아닌 인민보안성이 관리하는 교화소이지만 정치범을 수용하는 정치범교화소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윤태도 정치범교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윤태에 의하면 대표적인 정치범 교화소로는 감옥형태의 함경북도 청진 수성 교화소가 있다. 이곳에는 1급 정치범과 종신수용자들이 수감된다. 이곳의 이름은 교화소이지만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어 ‘정치범 교화소’라고 불리워진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김윤태는 청진의 경우 정치범교화소이지만 국가안전보위부가 관할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는 관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범 교화소를 별도 운영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는 관리소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⁴⁾ 둘째, 18호 개천 교화소는 14호 개천 관리소와 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있다고 한다. 18호 정치범교화소는 인민보안기관이 관할

3) 오경섭, “북한인권침해의 구조적 실태에 대한 연구,” p. 88.

4) 김윤태, “북한의 집단구금시설 운영과 인권유린 실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 33~34.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에서는 청진 25호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가 관할하는 관리소로 분류하고 있다. 김수암 외, 『북한인권백서 2007』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82.

하는데, 내부 상황은 정치범수용소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교화소와 관리소가 동일 지역에 동시에 존재하는 곳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 인민보안성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어떤 형태로, 어떤 기준으로, 얼마 정도 수용되었는지, 왜 관리가 인민보안성으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등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⁵⁾

북한 당국이 인정하는 교화소는 사리원 교화소를 비롯한 3곳이다. 북한은 1995년 4월말 평양축전 기간 동안 북한을 방문한 AI에 북한에는 사리원 교화소를 포함하여 3개의 교화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곳에는 약 800~1,000명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반국가사범(정치범) 약 240명은 ‘형산 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제출한 2차 국가보고서에서 교화소는 3개이며 수감기간은 형법(1999년)에 규정된 형벌 대로 1년 이상 15년까지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에는 각 도마다 1개 이상씩, 10여 개 이상의 교화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각의 교화소의 위치를 살펴보면 평안남도 개천군,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구역, 평안북도 신의주시, 평안남도 강동군,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황해북도 사리원시, 자강도 강계시, 강원도 원산시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현재 평양 형산 교화소, 평안남도 강동 교화소, 평안북도 신의주 교화소, 함경남도 함흥 교화소, 함경북도 회령에 소재하고 있는 교화소가 몇 호 교화소인지에 관해서는 증언에 차이가 있어 정확하지 않다.⁶⁾

다. 노동단련대

공식적인 명칭은 ‘각 지방 인민위원회 노동 단련대’라고 불리고 있다. 노동단련대는 죄를 지었지만 교화소와 같은 구금시설에 보내기가 애매하거나 그냥 내보낼 수 없는 경미한 범죄자들을 수사와 재판 절차 없이 일정 기간 격리시켜 강제노동을 시키는 구

5) 오경섭, “북한 구금시설 현황,” 평화재단 주최 북한인권전문가 모임, 2007.8.2.

6) 김윤태, “북한의 집단구금시설 운영과 인권유린 실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 35.

금시설이다. 북한에서 반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법적규제 장치를 마련한 대표적인 것이 노동단련대라고 할 수 있다. 수용자들의 대부분은 사회질서위반자들인데 폭력배, 암거래와 절도자, 밀수꾼, 단순 월경자, 3~30일 이상의 기업소 무단결근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생활총화 3달 이상 불참자, 강간미수범 등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간혹 간부들의 과실죄에 걸려 수감되는 사람들도 있다. 탈북자들이 급증했던 시기에는 교화소나 집결소에서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생기자 법적으로 형벌을 주기에는 경미한 단순 탈북자들을 대거 수용하기도 했다. 노동단련대는 15일~6개월 미만의 처벌을 받았을 때 수감된다. 그리고 교화소와는 달리 당증이나 공민증이 유지되어 공민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된다.

북한에 존재하는 노동 단련대는 최소한 200여 개 정도로 추정된다. 하나의 노동 단련대에는 적게는 100여 명에서 많게는 2,500여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도(道) 단위 노동 단련대는 각 도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전국의 각 시, 군, 3급 이상의 기업소가 위치한 곳에 1~2개 이상의 노동 단련대가 존재한다고 한다. 노동단련대의 관리·감독기관은 해당 지역의 인민보안기관이다. 노동단련대의 대장은 인민보안성 일반감찰과 보안원이 임명된다. 감독기관과 책임자만 그러할 뿐 나머지는 군 및 구역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간부나 군 특수부대 제대자 등 민간인들로 구성돼 운영된다. 그리고 단련대에는 각 시·군 보위부 담당 보안원이 책임자로 한 명씩 파견되어 있다. 단련대 대장은 인민위원회에서 파견하고 비서는 당위원회에서 파견하고 있으며, 현장 감독은 ‘노력감독원’이라 불리는데 출세하지 못한 특종병 제대군인들이 주로 맡는다.⁷⁾

라. 집결소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구금시설로 집결소가 있다. 집결소에 구금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증언들이 있다.

첫째, 집결소는 비교적 가벼운 규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인민보안성(경찰)에 넘겨지기 전 잠시 대기하는 곳이다. 인민보안성과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없이 무단결근자 등 각종 규정위반자들을 수용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키는 범죄자 임시 수용시설이다.

7) 김윤태, “북한의 집단구금시설 운영과 인권유린 실태 연구,” pp. 48~50.

둘째, 집결소는 국가안전보위부의 구류장이나 인민보안성 구류장에서 예심 과정을 마치고 난 후 최종 수감시설에 이감되기 전에 임시로 머무르는 곳이다.

셋째, 집결소 신세를 지는 사례로는 증명서 없이 소속 직장을 무단이탈 했거나 통행증 없이 열차에 탑승했을 경우가 주류를 이룬다. 집결소는 주로 ‘철도 질서 위반자’들을 수감한다. 따라서 집결소는 주로 철도의 환승역에 설치되어 있다. 1990년 초반까지 집결소에는 열차 여행 과정에 공민증 또는 통행증(출장 및 여행증명서) 미소지자, 여행 목적지 위반자 또는 여행 기간 위반자, 여행 목적지 확인 미납자(여행 목적지에 갔다 돌아 올 때는 숙박 거주했던 인민반과 보안소에서 통행증 뒷면에 숙박 확인을 받아야 함) 등 주로 ‘철도 질서 위반자’들을 수감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들이 대거 송환되면서 국경 지역 근처의 집결소는 탈북자 수감시설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넷째, 탈북자들이 복송되어 처음 잡혀오면 넘어온 지역의 국가보위부에서 조사받고 자기 출신지로 인계되는데 그 사이에 집결소에 머물게 되는 일시적으로 구금되는 곳으로 이해하면 된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철도환승역 뿐만 아니라 조·중 국경지역에 탈북자들만을 위한 집결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탈북자 전용 집결소로는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의 ‘농포 집결소’와 신의주 집결소가 있다.

집결소는 과거에 광산에만 두었으나 동구사회주의권 붕괴이후 북한사회에서 절도, 폭력, 부화(간통)사건 등 각종 범죄 등의 급증으로 인해 1992년부터 각 시(市)·군(郡) 및 연합기업소 단위까지 확대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집결소로는 평양 외곽의 철도 교통 요충지인 ‘간리 집결소’와 평안남도 ‘신성천 집결소’, 함경남도 ‘고원역 집결소’, 함경북도 ‘길주역 집결소’, 황해북도 ‘사리원역 집결소’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집결소에서는 현지의 형편에 따라 수용자들은 중노동을 하면서 15일에서 6개월 정도의 수용기간을 거치게 된다. 대기하는 동안에는 각종 육체노동을 하면서 사상개조를 받게 된다. 집결소에 머문 기간은 전과기록에 등재되지 않는다.⁸⁾

8) 김윤태, “북한의 집단구금시설 운영과 인권유린 실태 연구,” pp. 43~45.

마. 교양소

교양소라는 구금시설이 존재한다는 증언이 제기되어 왔다. 교양소란 법 규범이나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경미한 범죄자들을 집단적인 노동교양 시키는 곳을 말한다. 교양소는 인민보안성에서 관할하는데 교화소에 보내기에는 형량이 가볍고, 노동 단련대에 보내기에는 형량이 무거운 ‘비사회주의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구금시설이다. 형량이나 처벌의 강도 면에서 비교하자면 교화소와 노동 단련대의 중간정도라고 할 수 있다. 교양소에는 주로 단순 폭행, 경제사범, 절도범, 명예훼손 등으로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수감된다. 최근에는 단순히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단순 탈북자들도 수감되며, 탈북자 전용 교양소까지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양소는 교화소와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의 절차를 통해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재판 없이 인민보안성의 즉결심판만으로도 수감시킬 수 있다고 한다. 경범죄자의 경우에는 담당지역 인민보안서장의 결정과 해당 안전부 관할 검찰소의 확인만으로 노동 교양소에 수용할 있다. 북한에는 인민보안성이 관리하는 교양소가 전국에 8개가 존재한다고 한다. 명칭은 11호, 22호, 33호, 44호, 55호, 66호, 77호, 88호 교양소로 불리며 함경남도 영광, 함경북도 어랑, 평안북도 천마, 동림, 평안남도 증산, 강원도 원산 등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⁹⁾

최근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시·군·구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노동단련대와 별도로 탈북자들을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교양소가 존재한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 단련대가 아닌 탈북자 전담 교양소에 보낼 경우 인민보안서장이 어떤 사람에 대해 교양소 몇 년을 보내려고 한다고 보고하면 시·군 안전위원회에서 기준을 거쳐 결정된다고 한다.¹⁰⁾ 이러한 교양소의 존재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9) 김윤태, “북한의 집단구금시설 운영과 인권유린 실태 연구,” pp. 39~41.

10) 김수암, 『북한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p. 123.

바. 구류장

범죄 혐의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일정한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죄의 여부를 조사받는 장소이다. 구류장은 개념상으로는 남한의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 의미의 구류장에는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과 인민보안성 구류장이 존재한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구류장이 예심기간에 범죄자를 조사하기 위해 일시 구금하는 장소이다.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은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일체 면회가 허락되지 않는다. 설사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심을 통해 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경우에는 면회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인민보안성 구류장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과 달리 민감한 사안이 아닌 이상 면회가 일부 허용된다.

정치범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경제범이나 일반범죄는 인민보안성 구류장에 수감된다. 탈북자들의 경우 단순 탈북자는 보안성 구류장에 수감되며 탈북 후 남한의 교인, NGO관계자, 기타 외국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탈북자들은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보위부 구류장에 감금된다. 보위부 구류장에 감금된 정치범들은 예심을 거쳐 정치범 수용소로, 인민보안성 구류장에 감금된 수인들은 예심 후 재판을 거쳐 인민보안성에서 운영하는 교화소로 보낸다. 또한 재판까지 받을 필요가 없는 피의자들은 바로 노동단련대나 집결소로 보낸다. 탈북자들이 많이 수감되는 구류장으로는 조·중 국경 근처의 온성 보위부, 회령 보위부, 신의주 보위부, 무산 보위부, 혜산 보위부 등이 대표적이다. 탈북자들은 1차적으로 보위부 구류장에서 인적사항 및 거주지, 탈북 시기와 횟수, 탈북 동기, 탈북 후의 행적 등에 관해 심문조사를 받은 후 인민보안성 구류장이나 국경 지역의 도 집결소로 보내지게 된다.

구류장은 각 도와 시·군에 설치되어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은 지역별로 규모에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5~10개의 호실로 구성돼 있다. 각 호실은 4~5명 정도의 크기로 한 방에 적게는 9명, 많게는 15명 정도씩을 수감한다. 구류장에는 예심실(취조실)과 독방, 일반 감방이 있다.¹¹⁾

11) 김윤태, “북한의 집단구금시설 운영과 인권유린 실태 연구,” pp. 53~54.

IV. 구금시설의 인권실태

가. 법인식과 인권 유린

북한에서 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인권을 유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법은 정치의 표현으로서 정치에 종속되어 있으며, 당의 영도를 통해 법을 인식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북한에서 형법은 수령 김일성의 법률 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당 사법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계급적 원칙에 따라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법이 국가 정책, 특히 당 정책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당의 영도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형법규범의 해석이란 형법 조문 속에 담겨져 있는 당 형사정책의 기본 요구와 의도 및 기본 정신을 밝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형법조문을 통하여 당과 국가가 설정한 목적과 당이 해결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¹²⁾

우리는 법조문을 따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떨어져서 법의 기본정신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¹³⁾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당을 정치적으로 보위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역사적 위업을 보위하고 보장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의 본질은 사회주의 체제를 보장하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철저히 진압하는 한편, 인민들의 사상을 교양 개조하여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교시와 당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다. 개인의 인권침해를 막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의 영도 아래 범죄의 형태를 띠는 적대계급들의 반항과 낡은 사상 잔재의 침해로부터 주

12) 법무부, 『북한법연구(VII)-신형법』 (서울: 법무부, 1990), pp. 84~85.

13) 김일성, “우리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222.

체의 혁명위업을 보위하고 그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는 본질적 임무가 지속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사처리 과정에서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격이 다른 법률을 통하여 반영되고 있다. 판결판정집행법에서는 “국가는 판결, 판정 집행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국민의 이익도 다같이 보호하도록 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을 법규정에서도 드러내고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의 사명 상으로 정치적 색채를 삭제하고 범죄 처리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9년 형사소송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제1조)고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절차를 통한 범죄의 처리목적이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의 보위에 있었다. 그런데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능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는데 이바지한다”(제1조 형사소송법의 사명)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리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형사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나.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정치범수용소에서 정치범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굶주림이다. 정치범수용소에는 진료소가 있으나 의료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의약품도 거의 구비되지 않고 있다. 진료소는 주로 보위원과 그 가족들의 치료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정치범들은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더라도 아무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자연치유에 의존해야 하며,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은 물론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대량으로 발생한다. 정치범들은 만성적 굶주림과 혹독한 노동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면역저하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정치범수용소는 주거와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이고, 이, 빈대, 벼룩 등이 많기 때문에 불결한 환경으로 인한 파라티푸스 등 전염병이 자주 발생한다.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은 영양실조, 펠라그라, 폐결핵, 간염, 위장병, 치질, 늑막염, 동상, 정신병 등의 질병에 걸린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정치범들에 대한 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구금과 고문, 자의적 살인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정치범에 대한 옥설과 구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동일한 잘못을 범하더라도 보위원의 기분 상태에 따라 구타, 구류장 감금, 즉결처형 등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보위원들의 자의적 판단과 감정 상태에 따른 처벌이 암묵적으로 묵인되고 구조화됨으로써 폭력과 살인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여성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성 정치범들과 똑같이 가혹한 중노동과 폭력에 시달려야 한다. 여성들은 폭력과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수용소 생활 몇 달 만에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살이 빠지고 남성과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된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즉결처형, 공개처형, 비밀처형이 수시로 일어난다. 즉결처형은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처형방식이다. 공개처형은 처형을 확정된 후 정치범들을 모아놓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공개재판 절차를 거쳐 일방적 판결을 진행한 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방식이다. 비밀처형은 공포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 공개처형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정치범들의 반발의식이 고조되고, 집단적 반항 사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비밀리에 처형하는 방식이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도주자, 도주기도자, 반항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처형을 집행한다.

정치범수용소의 대표적인 인권유린은 연좌제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독신으로 수감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수감이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약 60% 정도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은 정치범들의 가족이나 친지들로서 연좌제를 적용받고 수감된 사람들이다. 북한은 형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연좌제를 가족들에게 적용하면서 정치범 당사자와 동일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된 정치범들은 사상교육 등 혁명화 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 혁명을 위해 영구히 격리해야 할 대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14) 오경섭, “북한인권침해의 구조적 실태에 대한 연구,” pp. 99~108.

다. 기타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유린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각종 구금 시설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광범위하면서도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고문과 가혹행위의 가해자는 보위원, 보안원, 계호원, 동료 수감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북한의 구금시설에 수감 경험이 있는 탈북자라면 거의 대부분이 고문을 당했거나 지켜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수감자들은 조사와 수감생활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노출되거나 고문 후유증,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 사망하기도 한다.

<표> 구금시설 내 주요 고문 유형

분류	주요 고문 유형
고문종류	정자세로 앉아있기, 잠 안 재우기, 각종도구에 의한 구타, 무차별 집단구타, 매달기, 화상고문, 물고문, 전기고문, 치아고문, 굶기기, 손톱 밑 찌르기, 성적수치심 유발, 낙타고문, 비행기고문, 배구시합, 고춧가루고문, 개구리고문, 주먹으로 안면구타, 발길질, 옷 벗기기, 겨울에 몸에 물 붓기, 벼룩고문, 징벌 방 수감, 동료 수감자에 의한 집단구타 등

교화소에서는 수감자들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보안원들이나 다른 동료 수감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게 된다. 또한 식량난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구금시설에서는 수감자들이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구금시설에서의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열병, 설사병, 영양실조와 폐렴, 결핵, 펠라그라병, 괴혈병, 아맹증, 위장질환, 현기증, 동상, 늑막염, 다리부종 등의 질병이 있다. 이러한 병들의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의한 합병증 때문에 발생한다. 이 외에도 파라티푸스,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등과 같은 제1군 전염병에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의약품이 턱 없이 부족한 조건에서 구금시설 내 수감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구금시설에서는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성적학대가 자행되고 있다. 이들 여

성들은 수감하는 과정에서 굴욕적인 조사와 폭력을 당하게 된다. 특히 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 이루어진다는 증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 구속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1999년과 2004년 형사소송법 제106조)되어 있으나, 새터민들과의 면담결과를 살펴보면 출산 전후 10개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강제낙태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중국에서 임신한 이후 강제송환된 여성들에 대해 낙태를 종용하고 출산시 영아를 방치하여 사망하도록 하는 사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제기되자, 북한은 일부지역에서 출산을 허용하고 아이를 중국남성 가족에게 인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03년 10월 온성군 보위부에서 송환여성들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고 출산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들인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에도 지속적으로 낙태유도 및 영아 방치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판소가 집행을 중지 또는 정지하는 판정을 하는 사유의 하나로 “로동교화형, 로동단련, 무보수 로동의 처벌을 받은자가 중병에 걸려있거나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일 경우”(판결판정 집행법 제18조 3항)를 들고 있다. 새터민 면담결과를 보면, 출산전후 10개월에 해당하는 임신부의 경우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히려 형 집행과정에서 임신여성에게 노동을 시키거나 구타하여 유산을 유도하는 경우,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여 낙태시키는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출산한 여성들의 아이를 돌보지 않음으로써 사망하도록 유기하는 조치들을 안전원들이 직접 하거나 혹은 조기석방을 명분으로 동료 수감자가 영아유기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¹⁵⁾

15) 김윤태, “북한의 집단구금시설 운영과 인권유린 실태 연구,” pp. 67~114; 김수암 외, 『북한인권백서 2007』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298~302.

V. 개선방안

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립 검토

구금시설에서의 인권 유린 행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인권유린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금시설에서 일선 공안요원들의 인권 유린 행위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독일사례를 원용,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보존소는 먼저 북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판결판정집행법, 검찰감시법 등 북한 법규를 중심으로 조사항목을 설정하도록 한다. 첫째, 수사와 예심과정에서 체포, 구속, 기소, 재판 등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특히 정치범의 경우 대다수 새터민들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정치범의 형사처리 절차에 대해 면밀하게 추적해나가야 한다. 또한 2004년 형법에서 신설된 노동단련형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예심→기소→재판의 절차를 거치는지 조사하도록 한다. 특히 형법에서는 교화소와 달리 ‘일정한 장소’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단련형을 언도받았을 때 어디에서 수감되어 형을 집행하는지 조사하도록 한다.

둘째,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인권보호 조항들을 중심으로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북한 법규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체포와 구속처분시 가족이나 소속단체에 제대로 통지하고 있는지, 임신 여성에 대한 구속과 형집행 정지조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구금시설의 현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범수용소의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범교화소가 존재한다는 증언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노동단련대, 집결소 등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구금시설의 현황과 구금 사유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교양소’라는 구금시설이 존재한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별 편차, 시기별 편차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별 편차와

관련하여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유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들이 많은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것이 심각하다면 그러한 지역별 편차를 반영하여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시기별 편차와 관련하여 특정 시점에서 인권이 유린되었으나 근절된 것이 있는 지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만일 근절되었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섯째, 고문, 강제낙태 등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제기되고 있는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제인권규약 활용 및 법규중심 접근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국내법규를 중심으로 인권을 개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고문의 공화국, 북한』이라는 실태보고서를 발간하였듯이 구체적 인권유린 사안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제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제NGO와 연대하여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북한 정부에 대한 압박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제3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북한은 2000년 2차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3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규약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실상 매 4년마다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규약위원회로 하여금 3차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3차 국가보고서가 제출되면 국제NGO와 연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국내법규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당사자로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부합되지 않는 인권유린의 요소를 담고 있는 조항들의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학자를 중심으로 북한법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모임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2004년 형법을 개정하였지만 북한의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담당자에 당사자인 피심자, 피소자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배척하고 재판소

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어 피소자의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부정되고 절차의 객체 내지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만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외부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는 확증은 없지만 북한은 2005년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형사소송법 9조 1항>

- 2004년: 형사소송관계자에는 형사소송담당자와 변호인,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같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관여하는 자가 속한다

- 2005년: 형사소송관계자에는 형사소송담당자와 변호인,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피소자**같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관여하는 자가 속한다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북한이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야 한다. 만일 북한이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다면 고문방지협약 제19조 1항에 따라 협약의 이행상황을 담은 최초보고서를 1년 이내에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 매 4년 마다 이행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비록 구속력이 없어 선전의 장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지만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 경제적 권리의 신장

법률과 법집행자의 인식문제라는 요인 이외 경제난으로 인해 구금시설에서 기아와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적 권리가 유린되고 있다. 특히 구금시설에서 제대로 식량과 의약품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기아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농업, 보건의료, 환경 등에서 대규모 개발협력이 실행에 옮겨지면 어느 정도 일반주민들의 경제적 권리는 신장되어 갈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당국의 법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구금시설에서의 수감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구금시설의 개보수를 비롯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구금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해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위 등 유엔인권관련 제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교화소를 일부 공개한 사례가 있는데, 국제NGO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유엔기구와 국제NGO가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라. 정치범수용소의 해체

구금시설의 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치범수용소의 해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정치범수용소 문제는 매우 절박하고, 반인간적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북한인권 문제에 포괄해서 다룰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의제로 설정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앰네스티 등 정치범 석방 문제를 다루는 국제인권NGO들이 정치범수용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북한인권단체들과 정치범수용소 관련 단체들이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관련 단체들은 국제앰네스티가 북한의 정치범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셋째,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국제이슈화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방안, 국제인권기구들을 설득해서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위한 국제적 대응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정치범수용소의 해체를 촉구하되, 북한 법규에 규정된 대로 정식 절차를 거쳐 교정시설에 수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까지 처벌되는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16) 오경섭, “북한사회와 정치범수용소의 인권 보호 및 개선방안,” 북한인권정보센터 주최 토론회, 2007.10.23.

이와 관련하여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NGO와 연대하여 미국이 수교 과정에서 정치범수용소의 해체를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 노동단련대, 집결소의 실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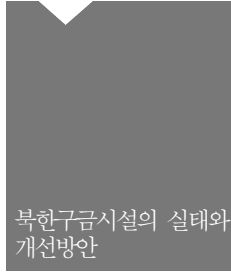
노동단련대와 집결소 등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구금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먼저, 이러한 시설에 대한 구금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절차에 따라 수용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강제노동의 문제를 시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강제노동은 구류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부과되고 있는데 인권침해 유형들을 살펴보면 노동시간 준수 위반, 혹독한 노동 강도, 처벌로서의 연대노동과 배급량 삭감, 일상적인 야간 추가노동, 노약자 및 임산부, 환자 등에 대한 노동부과, 위험한 작업환경과 안전장비 미구비, 관리자들의 생산물에 대한 착취와 임의노동,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 미보장 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 외에 정치적 처벌수단으로, 임의적인 처벌방식으로 부과되는 ‘강제노동’은 명백한 인권유린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구금시설 내에서 행하여지는 강제노동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맞게 행하여지고 있는가의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인권분야 기술협력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과 개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사법관리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수용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먼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인권분야 대화와 기술협력을 수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북한은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문제로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체제를 왜하시키

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인권을 활용하고 있다는 논리로 결의안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따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를 부인하고 결의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인권분야 대화와 기술협력조차 거부하고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사법행정, 인권교육 등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법행정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활동에는 법집행자뿐만 아니라 판사, 변호사, 검사, 교도관 등을 위한 훈련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국제인권보호체계,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 수사 체포·재판전 구금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인권기준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기술협력을 수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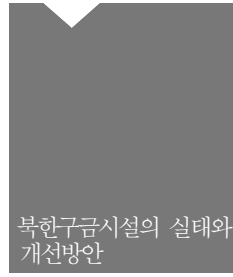
질문&메모

질문자 성함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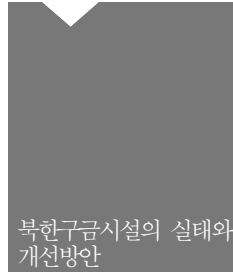
1. 질문하고 싶은 발표자나 토론자

2. 질문 또는 토론 내용

질문&메모
질문자 성함
소속



1. 질문하고 싶은 발표자나 토론자
2. 질문 또는 토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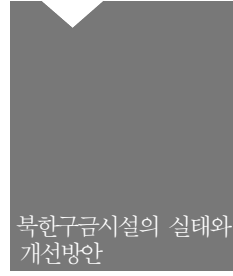


질문&메모
질문자 성함
소속

1. 질문하고 싶은 발표자나 토론자

2. 질문 또는 토론 내용

질문&메모
질문자 성함
소속



1. 질문하고 싶은 발표자나 토론자
2. 질문 또는 토론 내용